##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제2024-181호 개선방향 검토의견

## 1. 농촌진흥청 개선방향

○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직접살포형 농약(입제) 에만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경우 주변 농작물 및 농경지에 비산되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용해야한 다"는 표시는 무인항공에 등록된 전체 농약에 대한 표시 문구에 해당함

## 2. 산업계 의견

구분	검토의견	비고
A٨	<ul><li>○ 전체 농약에 대해 표기를 확대하는 것은 경과조치만 충분하다면 표기하는데 문제없음</li><li>○ 다만, 라벨 공간을 고려하여 적색 테두리 표시는 재검토 필요</li></ul>	
B사	<ul> <li>○ 회사 내부적으로 무인항공 등록 농약은 주의문구를 라벨에 삽입하여 유통하는 중임</li> <li>○ 신설되는 문구를 직접살포형농약(입제)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 등록 농약에 확대 적용하는 (안)에는 동의함</li> <li>○ 적색 네모테두리가 아닌 약효약해 일반 주의사항 혹은 검정 색의 별도 행의 주의문구로 표기 하는 (안) 건의</li> </ul>	
C사	<ul> <li>○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들에 주의문구를 넣는 것은 동의함</li> <li>○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등록되는 희석하지 않는 제형에 "필수"적으로 해당 주의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만일 희석하지 않는 제형 중 회사 자체적으로 무인항공 방제용으로 판매하고 싶지 않을 시 주의문구를 뺄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요청</li> </ul>	

○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희석하지 않는 제형에 대해 별도로 무인항공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구가 개선되더라도 단위면적당 투입량이 일반살포와 동일한 입제 형태의 제형에 대해 별도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 협회

- 밭 제초제 입제 무인항공 시험방법 검토 과정에서 시험의 불 필요함이 인정되어 해당 고시개정이 추진되었고, 개정 검토 과정에서 살균,살충,제초제 모두 입제에 해당하는 농약은 별 도 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항공 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필요
- 입제에 대한 명확한 범위 필요
  - 입제, 세립제, 대립제, 직접살포정제 등